



제427회 국회(임시회)
제3차 환경노동위원회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에 걸린 국제적 멸종위기종에
대한 신고 〉

■ 김위상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9219호)

2025. 7.

환 경 노 동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항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‘폐사에 이를 수 있는’ 질병에 걸린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신고	2
※ 참고자료	6
1. CITES 협약 개요 및 운영체계	6

I. 제안경위

2025년 3월 21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·양수하려는 때에는 양도·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‘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’라는 문구는 단순 감기부터 모든 질병에 걸린 멸종위기종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‘해당 종이 죽거나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’로 수정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환경부장관 신고의무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6항).

Ⅲ. 검토의견

1.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에 걸린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신고

개정안은 수입·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신고 의무 대상 중 ‘질병’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‘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’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6조제 6항).

[개정안 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16조(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) ① ~ ⑤ (생략)	제16조(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·양수(사육·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려는 때에는 양도·양수 전까지, <u>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</u> 지체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 종이 죽거나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제외한다. ⑦·⑧ (생략)	----- ----- -----. ⑦·⑧ (현행과 같음)
	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「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(CITES)」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생물로서 거래 규제 강도에 따라 부속서 I, II, III로 구분됨¹⁾²⁾.

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·수입·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,

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·양수하거나,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⁾.

1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3. “국제적 멸종위기종”이란 「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」(이하 “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”이라 한다)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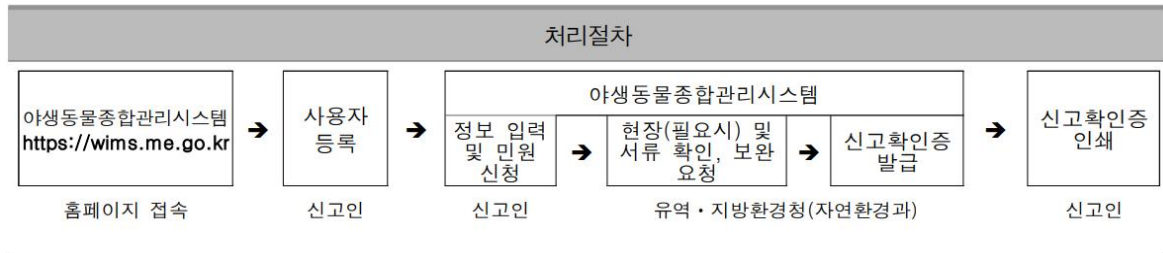
가.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I에서 정한 것

나.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II에서 정한 것

다.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III에서 정한 것.

2) <참고자료. CITES 협약 개요 및 운영 체계>

[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·질병 신고 절차]



※자료: 환경부

다만, 현행법 규정상 ‘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’의 문구로 인해 모든 질병에 걸린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해당 문구를 ‘해당 종이 죽거나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’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변경하여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, 법 조항의 적용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.

다만, 최근 3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‘폐사’신고는 ’22년 1,633건, ’23년 2,007건, ’24년 2,056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‘질병’ 신고

3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)

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·수입·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「약사법」에 따른 수출·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(Ⅰ·Ⅱ·Ⅲ)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
 2. 생물의 수출·수입·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
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
- ② ~ ⑤ (생략)

⑥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·양수(사육·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려는 때에는 양도·양수 전까지,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제외한다.

는 동기간 동안 모두 0건인 점과

[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·수출, 양도·양수, 질병·폐사 신고 현황]

(단위: 건)

2022					2023					2024				
수입	수출	양도 양수	폐사	질병	수입	수출	양도 양수	폐사	질병	수입	수출	양도 양수	폐사	질병
5,724	1,547	40,001	1,633	0	6,413	1,490	46,307	2,007	0	9,838	1,697	24,539	2,056	0

※자료: 환경부

법 제16조제6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유통 현황 관리를 위한 조항으로 양도·양수 및 폐사 신고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4) 개정안을 해당 종이 ‘폐사한 때’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
02)6788-5541

4) 유사입법례로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사례가 있음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(야생생물의 수출·수입 등)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(가공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수출·수입·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(이하 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으로서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야생동물을 양도·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보관하고 있는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※ 참고자료

1. CITES 협약 개요 및 운영 체계

□ CITES 협약 개요

- (명칭)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
- (목적) ①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보호 ② 야생생물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무질서한 채취·포획 억제
- (채택 및 발효) '73.3.3 채택, '75.7.1 발효('20.3 현재 당사국 183개국)
 ※ 우리나라: '93.7.9 가입(120번째 당사국), '93.10.7 발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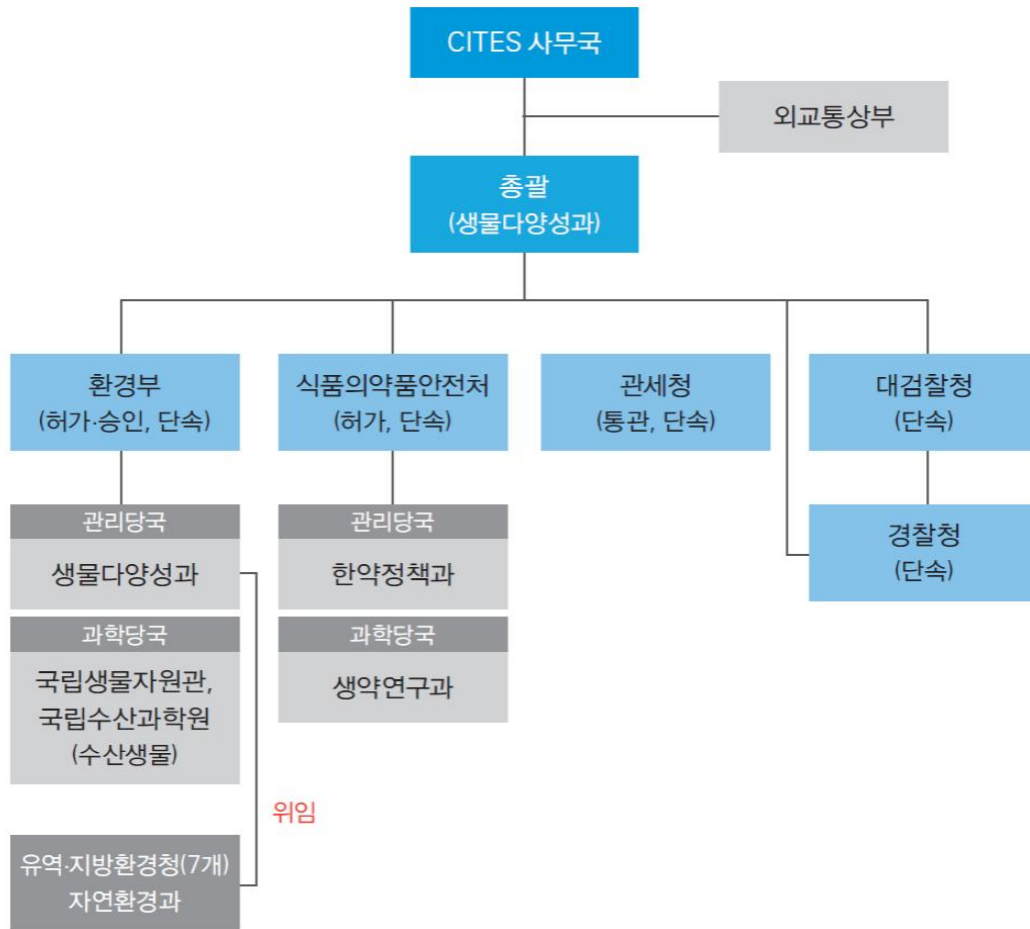
□ 협약 운영 체계

- (운영) UN 환경계획의 행정적, 재정적 감독을 받아 운영
- (부속서) 기준에 따라 규제 대상 생물종을 부속서 I, II, III으로 구분

구분	부속서 I	부속서 II	부속서 III
부속서 분류 기준	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 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	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 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 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 할 수 있는 종	당사국이 관할권 안에서 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 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 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 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
규제 내용	상업목적의 국제거래는 일반적 금지 (학술연구 목적의 거래만 가능)	상업·학술·연구목적의 국제거래 가능하나 규 제 적용	상업·학술·연구목적의 국 제거래가 허용, 해당 국 가에 대해서는 규제적용
구비 문서	거래시 수출·입국의 양국정부에서 발행되는 수출·입 승인서 필요	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필요	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 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
주요 대상종	호랑이, 고릴라, 밍크 고래, 따오기 등 약 700종 이상의 동물, 약 400종 이상의 식물	하마, 강거북, 황제전갈, 오엽인삼 등 5,000종 이상의 동물, 32,000종 이상의 식물	바다코끼리(캐나다), 북방살모사(인도) 등 약 190종 이상의 동물, 약 10종 이상의 식물

□ 국내 이행 체계

- 환경부가 국내 이행의 총괄부처로 해양수산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관세청, 대검찰청 등의 협조를 통하여 이행 중



관련부처	관리당국	과학당국	관련법규	담당 생물종
환경부	생물다양성과 (7개 환경청 위임)	국립생물자원관	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제2조, 제16조)	조류, 포유류, 양서·파충류, 어류, 곤충류, 수산생물류, 식물류 등
해양수산부		국립수산물과학원	수산자원의 이식·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,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	어업 관련 어류, 고래목 * 국립생물자원관 전문 검토
식품의약품안전처	한약정책과	생약연구과	약사법(제43조),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(제61조)	약재용 동·식물
관세청			관세법(제226조)	전종

※자료: 환경부